

우리나라 監査報酬體系에 대한 評價*

An Evaluation of Audit Fee Structure in Korea

李 晚 雨**

朴 柱 性***

논문접수일 : 94. 5

게재확정일 : 94. 7

초 록

監査人和 監査對象企業은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상호합의한 監査서비스의 對價인 監査報酬下에서 監査契約를 맺게 된다. 自由受任制度下의 監査報酬는 일반적인 經濟財와 마찬가지로 監査投入時間으로 代辯될 수 있는 監査投入原價와 監査를 받음으로써 얻는 效益이 相互 均衡되는 곳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률적으로 監査對象企業의 資産規模를 기준으로 한 監査報酬體系가 사용되고 있다.

資産規模를 기준으로 한 現行監査報酬體系는 外國의 그것과 비교하여 非合理的일 수도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監査市場의 特性上 監査 서비스에 대한 價格算定에는 일반 經濟財와는 달리 監査投入原價보다는 危險補償의인 要因이 주된 役割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監査市場의 環境의인 變數를 간과하고 실제 監査投入時間만을 기준으로 하는 監査報酬體系는 자칫 監査市場의 失敗를 가져올 素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危險報償의인 性格이 짙은 우리나라의 監査報酬體系는 監査人, 被監査人 및 監査利用者의 實情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妥當性이 있는 制度로 評價될 수 있다. 앞으로는 監査人의 倫理意識提高와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을 높여 監査制度의 發展을 圖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회계학회 1994년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I. 머리말

현대 기업의 특징은 所有와 經營이 분리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업의 소유주인 株主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代理人인 經營者가 기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도 경영자가 통제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는 현재 또는 미래의 株主에 의하여 직접 觀察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市場經濟下에서의 稀少資源의 最適配分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經濟主體가 동일한 情報에 대하여 同等한 接近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기업내용의 공시는 투자자들 간의 情報不均衡을 해소시켜 情報利用의 公平性을 確保하게 하면서 投資決定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經營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會計情報을 조작하려 들 수도 있다[2]. 그 한가지 예로 경영자의 보수가 회계상 기간이익에 연결되어 있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會計情報시스템을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상 기간이익이 경영자의 거취와 직결될 때는 더욱 심화된다. 회계상 기간이익을 조작할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는 이익의 조작이 더 용이한 會計情報시스템을 選好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가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행할 필요가 있다. 회계정보 공시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獨立的인 제3자에게 會計監査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會計情報의 公示는 企業의 自律에만 맡겨서는 效率性과 公平性이 해결될 수 없고 強制的인 公示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經營者의 不公示動機, 情報의 外部效果와 公共財的 性格, 私的인 情報深素努力의 節減등을 들 수가 있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會計監査 역시 권한있는 기구에 의하여 실시가 강제되고 적절한 事後管理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會計監査에 대한 規制에는 監査人의 資格要件, 監査受任方式, 監査報酬決定方式 및 監査報告書에 대한 監理가 포함된다.

監査報酬는 감사서비스에 대한 對價이다. 감사대상기업의 독립성 유지가 필수적인 監査市場에서 監査報酬의 決定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감사보수는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감사보수는 감사서비스의 가격이므로 실지 監査所要原價와 監査를 받음으로써 얻는 惠澤의 相互均衡하에서 결정이 되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실지 監査所要原價를 반영하는 監査投入時間을 기준으로 監査報酬을 결정하는 관례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企業의 資產規模를 기준으로 한 監査報酬體系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資產規模를 기준으로 한 監査報酬體系의 理論的 또는 實務的 根據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監査報酬體系의 性格을 규명하고, 監査報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狀況變數들에 대한 특징이 現行監査報酬體系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評價를 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머리말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監査報酬의 決定要因을 糾明하기로 한다. 이어서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現行 監査報酬의 體系를 살펴본 다음, 제 IV 장에서 이에 대한 評價를 시도하고, 제 V 장에서 結論을 맺기로 한다.

II. 監査報酬 決定要因

一般的인 財貨나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需要와 供給이 일치되는 점에서 市場價格이 形成되며 需要者가 供給者를 선택하여 거래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會計監査의 경우는 감사서비스의 需要者와 產出의 특성으로 인하여 市場價格이나 去來方式이 일반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결정된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절차는 監査對象 財務諸表에 중요한 이상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一定水準의 監査技術을 가진 감사인이 회계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이상항목을 발견할 확률은 監査範圍가 擴大되고 監査人力이 더 投入됨에 따라 증가한다.

한편, 會計監査의 產出인 중요한 이상항목을 발견할 확률은 一般消費財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Ng은 감사의 산출과 일반소비재와의 차이를 觀察不可能性, 合算不可能性, 共有性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18].

觀察不可能性(Unobservability)이란 감사의 산출인 중요한 이상항목을 발견할 확률에 대

한 觀察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인이 불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여 不實한 監査意見을 提示하더라도 이를 쉽게 摘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불량품은 육안 또는 기계로써 즉시 발견할 수가 있으나 감사서비스의 산출은 그 자체가 관찰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량한 산출도 역시 관찰이 불가능하다.

合算不可能性(Non-additivity)이란 회계감사의 산출인 중요한 이상항목을 발견할 확률은 다른 감사인의 산출과 합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감사서비스의 社會的 供給曲線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共有性(Non-privacy)이란 회계감사의 산출인 중요한 이상항목의 존재여부에 관한 감사의 견은 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배제하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監査費用을 부담하지 않고 無賃乘車(Free-riding)를 하려하기 때문에 會計監査를 法的으로 強制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Ng은 이와 같은 產出의 特性 때문에 회계감사서비스는 그 가격을 일반소비재나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會計監査서비스의 產出이 관찰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관찰가능한 다른 代用物(Proxy)과 연결시켜서 그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代用物로서는 미국에서는 監査投入時間이 주로 使用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企業의 資產規模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감사인의 일당등 감사인력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보수도 일부 사용하고 있음).

Ng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감사서비스의 品質은 觀察不可能하며 또한 감사서비스가 무임승차가 가능한 측면에서 볼 때 公共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또는 미래의 주주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회계감사의 產出을 消費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회계감사서비스가 公共財라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제재는 公共財的 側面과 私有財的 側面을 함께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외관상 아름다운 주택은 이를 사용하는 집주인에게 효익을 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보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私有財로써 인식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를 보고 즐기는 사람의 公共財的 側面을 무시한다. 궁극적으로 한 상품이 공공재로 모델화 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사유재로 모델화되는 것이 적합한지는 각 모델의 예측에 대한 實證的 妥當性에 依存하는 것이다.

회계감사서비스도 私有財의 側面을 찾아 낼 수 있다. 만약, 主人인 所有主가 代理人인 經營者를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함에 있어서, 회계감사가 경영자에 대한 최소비용의 統制技法이라면 자본시장은 기업이 會計監査를 받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소유자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資本市場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회계감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監査報酬는 결국 기업의 현재 소유자인 주주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監査를 받게 되면 그 기업의 주식이 자본시장에서 유리하게 평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의 주주들이 效益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감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결정방식은 다른 私有財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

한편, 회계감사서비스를 현재의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無償으로 이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의 주주들이 이러한 無賃乘車者(Free-Rider)의 회계감사서비스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 예로써 DeAngelo는 駐車場 無料利用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12]. 예를 들어 호텔에서 駐車場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고객을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호텔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무료로 주차를 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駐車場運營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호텔요금에 반영되어 호텔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호텔이용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료로 이용하는 현상은 統制費用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호텔고객이 아니면서도 무료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호텔에서 이를 통제할 필요를 느끼게 되면 호텔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급하고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통제비용이 들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객인 아닌 사람들의 무료주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無賃乘車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防止하려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주차장의 경우와는 달리 효과적으로 無賃乘車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統制費用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소유주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된 회계감사서비스의 산출에 대한 다른 무임승차자의 이용을 막는 조치가 費用·效益 比較側面에서 유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주주들 사이에서의 無賃乘車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주주들은 모두 감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현재의 주주들이 모두

無賃乘車를 기대하고 監査費用分擔方法에 대해 同意하지 않을 경우에 감사가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市場失敗가 誘發되어 最適資源配分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조건으로써 회계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비용은 현재의 주주들이 자기의 지분비율 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이하 外監法이라 줄여쓰)에서는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總資產規模가 6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非上場企業에 대한 監査는 株式會社制度의 근본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특질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株主의 有限責任을 들 수 있다. 주주에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有限責任만을 부여함으로써 위험을 적게 부담하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有限責任制度를 惡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독립적인 職業的 專門家에 의한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社會的 信賴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효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현재의 주주가 監査報酬를 부담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회계감사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產出의 觀察不可能性을 들 수 있다. Ng은 회계감사의 산출 즉, 이상항목의 摘發可能性은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들에게 觀察不可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g은 이러한 監査產出의 觀察不可能性 때문에 監査報酬가 감사의 산출이 아닌 投入量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계감사의 산출은 直接的으로 觀察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間接的으로는 이를 觀察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감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감사인의 意見을 信賴하게 되는 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감사의견에 대해 信賴性程度를 관찰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會計監査의 產出을 監査結果 公表되는 監査意見에 대한 信賴程度로 본다면 이에 대한 代用物은 監査人の 評判으로 볼 수 있다. 監査人에 대한 評判을 회계감사서비스의 산출에 대한 代用物로 봄에 있어서도 회계감사의 社會的 需要에 대한 巨視的인 側面과 個別監査人에 있어서의 監査人の 名聲(Brand name)에 대한 微視的인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巨視的인 側

面에서 보면 감사의 산출인 監査意見은 專門職으로서 公認會計士制度의 社會的 信賴를 전제로 받아들여져지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公認會計士制度의 社會的 信賴를 높이기 위한 각종 規制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微視的인 側面에서 보면 個別監査人의 名聲은 監査서비스의 品質에 대한 시그널(Signal)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監査人들은 감사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名聲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監査遂行過程을 통해 감사인은 專門的 技術, 特化된 知識, 그리고 專門家의 名聲을 이용하여 財務諸表에 대한 情報價値를 增大시키게 된다. 자신들이 表明한 監査意見이 資本市場에서 가치 있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은 顧客에게 不利한 情報라도 진실되게 밝히려고 하는 獨立性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인의 獨立性이란 고객의 利害關係 側面에서 불리한 정보일지라도 이를 監査意見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動機로 정의된다. 監査人이 獨立性을 지니고 專門的 技術을 활용하여 財務諸表에 포함된 誤謬를 摘發해서 이를 보고할 수 있는 경우에만 會計監査는 價値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監査서비스의 產出의 代用物으로써 監査人의 評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監査人이 協力하는 全體的인 立場에서의 努力과 個別監査人의 努力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共同努力은 監査受任制度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獨立性의 측면으로 보아서는 監査受任制度를 配定方式에 의하고 監査報酬도 감사인간에 事前에 約定된 水準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개별적으로 名聲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동기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감사인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監査受任制度는 크게 配定方式과 自由受任方式으로 나눌 수 있다. 法定監査의 경우 外監法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까지는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 構成公認會計士의 數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을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었다. 配定方式에 의한 受任制度는 감사인간의 過當競爭을 止揚함으로써 監査人의 獨立性을 提高하는데 그 주요한 目的이 있다. 그러나 配定方式은 公認會計士 資格을 갖춘 사람이면 별다른 노력없이도 배정된 감사를 수임하여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게 되어 전반적인 공인회계사업계의 발전을 阻害하는 要因으로써 作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外監法이 시행된 1982년부터 일정한 범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自由受任方式으로 轉換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會計監査서비스는 의뢰인과 이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이해가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의 서비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의사와 환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된다. 또한 辯護士와 訴訟依頼人도 勝訴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된다. 그러나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은 協力的 關係에 있다기보다는 獨立的이며 對立的인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監査對象企業에 감사인을 선정할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감사대상기업에 유리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감사인이 더 많이 수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自由受任方式이 定着되려면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監査人의 名聲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정보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하며 不實監査에 대해서는 監督機關에 의한 監理 또는 監査報告書利用者들의 損害賠償請求등에 의해서 적절한 制裁措置가 가해질 수 있어야 한다. 자유수임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한 소송이 계속 제기 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규제도 강력한 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사인에 대한 소송사례도 드문 편이어서 감사인들이 소송위험은 중요시 않고 고객의 확보에만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監査受任制度和 監査報酬體系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들이 보다 높은 監査品質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감사인을 선호함으로써 감사인들 스스로 감사기술을 더 개발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은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인들이 地緣, 學緣 등 人間關係를 중심으로 顧客誘致競爭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대상기업들도 監査의 品質에 대해서는 별로 關心을 두지 않게 되며 企業의 實權者와 가장 個人的 親分이 있는 監査人에게 監査業務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監査의 品質은 결국 財務諸表의 중요한 漏落이나 虛偽記載등(重要한 誤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確率에 대한 確信의 程度로 볼 수 있다. 또한 監査品質은 監査對象企業의 財務諸表에 存在하는 重要한 誤謬를 發見할 確率과 發見할 誤謬를 報告할 確率의 結合確率에 의해서 결정된다[12]. 즉, 監査危險이 적을수록, 獨立性이 높을수록 監査品質 또한 높아지는데 獨立性에 問題가 있는 受任은 감사품질의 결정에 惡影響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信賴마저도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自由受任方式에 의한 監査人간의 감사대상기업 유치경쟁이 監査報酬의 割引競爭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수입방식으로 바뀐 이후에 감사인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監査報酬의 割引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監査報酬의 割引은 기업들로부터 監査報酬가 원래 너무 높게 策定되어 있는 것으로 認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問題는 監査報酬의 割引이 監査品質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監査報酬를 割引할 경우 감사인들이 人力을 덜 投入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사를 받는데 所要되는 企業의 時間과 經費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렇게 監査報酬의 割引事例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더 낮은 監査報酬를 提示하는 감사인을 찾아 계속 감사인을 변경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들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할인을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割引競争은 監査人の 빠른 回轉을 가져와 繼續監査에서 오는 利得을 얻을 수 없게 하며, 監査의 非效率性으로 인하여 監査의 品質을 떨어 뜨리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監査人들 사이의 過當競争이 가져올 이상과 같은 問題點들은 결국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不信을 招來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모든 監査人들이 損害를 입게 되는 共謀者의 葛藤(Prisoner's dilemma)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監査受任에 있어서는 一定한 範圍內에서 競争을 認定하더라도 監査報酬는 全的으로 監査投入時間을 기준으로 決定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監査環境에서는 問題의 素地를 지니고 있다.

會計監査制度의 發展을 위해서는 결국 會計監査의 産出인 監査意見에 대한 信賴水準을 높이는 側面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監査受任制度和 監査報酬體系도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우리나라 現行監査報酬의 體系

우리나라의 監査報酬는 그 上限을 政府가 規制하고 있다. 公認會計士法 施行令 第20條의 2에서는 공인회계사는 財務部長官이 承認한 報酬 以上을 받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은「公認會計士 情報規程」이 마련되어 있다.

公認會計士 報酬規程은 1967년 1월 20일자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制定된 이후 수차례의 改正을 거쳤는데,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는 會計監査, 會計에 관한 鑑定·證明, 會計에

1. 個別財務諸表的 會計監査

가. 基本報酬

資産總額 (A)	報酬額 (B)	報酬率 (C)
5億원미만	2,720千원	0.544%초과
5億원	2,720 〃	0.544%
10 〃	3,010 〃	0.301%
30 〃	4,040 〃	0.1347%
50 〃	5,000 〃	0.1000%
80 〃	7,800 〃	0.0975%
120 〃	11,460 〃	0.0955%
300 〃	13,740 〃	0.0458%
500 〃	15,860 〃	0.0317%
1,000 〃	17,970 〃	0.0180%
3,000 〃	24,150 〃	0.0081%
5,000 〃	28,730 〃	0.0057%
1兆원	37,370 〃	0.0037%

(주) C=(B÷A)×100

① 基本報酬은 上記의 資産總額別 報酬額을 基準으로 다음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다.

$$\text{直下級資産 規模의 報酬額} + \left[\frac{\text{直上級資産規模의 報酬額}}{\text{(-)直下級資産規模의 報酬額}} \right] \times \frac{\text{當該資産總額} - \text{直上級資産規模}}{\text{直上級資産規模} - \text{直下級資産規模}}$$

② 總資産額이 1조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分에 대하여 10,000분의 0.037을 곱한 金額을 1兆원의 報酬에 合算하여 適用한다.

③ 위의 ① 및 ②에 의하여 産出된 金額중 萬원 單位미만의 端數가 發生될 때는 이를 切捨한다.

나. 會計監査報酬를 算定하기 위하여 被監査會社의 本社와 分離된 各工場, 營業所(支店, 出張所 包含), 長期建設工事 現場등을 각각 한 단위의 事業場으로 하여 事業場이 1개인 경우에는 “가”목의 規程에 의하여 算出된 基本報酬의 10%, 2개인 境遇에는 15%, 3개인 境遇에는 20%, 4個以上인 境遇에는 25%를 각각 加算한다.

다. 證券去來法에 의한 上場法人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되는 報酬額의 17%를 가산하고, 登錄法人에 대해서는 12%를 가산한다.

라. 繼續監査(直前事業年度の 監査人과 當該事業年度の 監査人이 同一한 境遇를 말한다)가 아닌 法人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算出된 報酬額의 10%를 가

算한다. 다만,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外部監査對象이 되는 事業年度分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마. 會計監査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通常의 執務日數를 超過하여 監査한 경우에는 當該超過한 執務日數에 대하여 “가”목 내지 “라”목의 報酬이외에 別途의 執務報酬를 追加하여 받을 수 있다.
- 바. 法院 또는 利害關係人의 委囑에 의한 企業의 財政과 收益狀態의 調査등은 會計監査時의 報酬에 준하되 특별히 精密한 調査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同 調査를 行함에 있어서 그 執務한 日數에 따라 別途의 執務報酬를 받는다.

2. 聯結財務諸表의 會計監査

가. 基本報酬

聯結財務諸表上의 聯結資産總額을 基本報酬의 規程의 “가”목의 基本報酬에 적용하여 산출한 金額의 30%로 한다.

- 나. 支配會社의 從屬會社가 1개 또는 2개인 경우에는 “가”목의 規程에 의하여 算出된 基本報酬의 10%, 3個 또는 4個인 境遇에는 20%, 5個以上인 境遇에는 30%를 각각 加算한다.

관한 立案, 法人設立에 관한 會計, 會計에 관한 計算·整理, 稅務代理, 公인회계사 日當·相談料 및 顧問料에 관한 規程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회계감사와 관련된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上記의 報酬 이외에도 會計監査報酬는 다음과 같은 基準에 의하여 加減調整되게 된다.

- ① 公認會計士 또는 補助者로서 執務를 위하여 그 事務所 所在地 외에 出張할 때는 앞에서 規定한 報酬이외에 交通費, 宿泊費, 食事費 등의 實費 범위내에서 韓國公認會計士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出張費를 받는다.
- ② 外國語로 公認會計士 職務를 遂行하거나 外國語 報告書를 作成할 境遇에는 각 該當報酬額의 50%를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 ③ 報酬는 事業年度 1年을 基準으로 한 것이며 事業年度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이의 2분의 1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간주한다.
- ④ 事業年度가 1년인 경우 事業年度 開始日로부터 6월간의 半期財務諸表에 대한 確認 및 意見表示 報酬는 위의 報酬의 10분의 1로 한다.
- ⑤ 監査를 받지 아니한 聯結財務諸表가 있는 法人에 대하여는 위의 報酬의 10%를 加算한다.
- ⑥ 外國의 證券市場 上場이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起債등 對外國 特殊目的用 聯結財務諸表의 監査 또는 系列企業 全體에 대한 財務諸表의 作成 및 監査證明을 하는 경우의 보수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승의에 의하여 決定할 수 있다.

- ⑦ 算定된 報酬額중 千원단위 미만의 端數가 발생될 때에는 이를 切捨한다.
- ⑧ 公認會計士 業務遂行에 關聯한 實驗費, 鑑定料, 測量費, 監査報告書 및 諸報告書 印刷費, 기타 전호와 유사한 費用 등은 委囑者의 負擔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 公認會計士 報酬規程은 기본적으로 監査對象企業의 資産總額의 一定率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規定되어 있다. 이에 補充的으로 監査의 難易度를 고려하여 本社와 分離된 事業場이 있을 때에는 그 수에 따라 基本報酬의 10%에서 25%까지를 加算한다. 그리고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監査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각각 監査報酬의 17%와 12%를 가산하여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初度監査의 경우에는 監査報酬의 10%를 가산하여, 監査對象企業에게는 監査人의 交替를 不當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誘引을 제공하고, 監査人에게는 繼續監査를 통하여 監査品質의 向上을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監査對象企業에게는 감사인의 交替를 不當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誘引을 제공하고 있다. 즉, 既存監査人이 保有한 監査對象企業의 지식으로 인한 準地代(Quasi-rents)로 인하여 監査人의 交替時에는 監査人과 監査對象企業 모두에게는 각각 新規監査着手費用(Start-up costs)과 監査人을 理解시키는 것을 포함한 去來費用(Transaction costs)이 발생하므로, 監査人과 監査對象企業은 既存의 關係를 維持하려고 한다.

이러한 準地代의 特徵때문에 新規監査契約을 원하는 監査人은 繼續監査를 하여 準地代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初度監査費用보다도 더 낮은 監査報酬로써 監査對象企業과의 協商에 임할 것이다[14]. 따라서 현실적으로 10%가산규정은 監査人 交替時에 新規로 監査契約을 원하는 監査人들과 監査對象企業의 監査報酬協商에서 無視되기 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監査人의 不當解雇를 막기 위해서는 監査對象企業의 詳細한 監査人 交替事由를 證券去來所에 즉시 公示하도록 規制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의 우리나라 監査報酬體系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資産總額에 따라서 監査報酬率을 정함에 있어서 그 料率이 資産總額에 대비하여 最高 0.544%로부터 最低 0.0037%까지 遞減的으로 減少한다. 이는 監査規模에 따라 監査危險이 遞減的으로 增加함을 반영한 危險補償額的 性格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基本報酬를 定함에 있어서 같은 資産規模일지라도 上場法人, 登錄法人 및 初度監査法人에 대해서는 一定率을 加算하는 方式을 사용하는데 이는 現行 監査報酬規程이 監査時間投入時間을 포괄하여 監査危險의 補償額 性格을 重視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個別財務諸表나 聯結財務諸表에서 각 事業場의 監査의 難易度を 고려하지 않고 事業場의 個數에만 의거하여 監査報酬를 결정한 것은 監査投入時間보다는 監査危險의 補償額性格이 監査報酬決定에 主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監査報酬體系에 대한 評價

會計監査에 대한 報酬는 監査人の 人力 및 設備投入에 대한 補償의 變數와 監査意見의 표명에 따른 法的危險에 대한 補償額의 두가지 變數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監査人の 人力 및 設備投入의 變數는 古典인 經濟學의 價格決定의 原理인 投入原價(Input cost)라는 限界費用을 증시한 것이며 이는 現行 美國의 制度下에서 사용되고 있는 監査投入時間基準 報酬體系이다. 두번째 變數인 監査意見表明에 따른 法的危險에 대한 補償額은 監査人이 監査를 遂行한 후에 부딪칠 수 있는 未來의 可能한 現金흐름의 變動을 確實한 現金흐름(確實性 等價: Certainty Equivalent)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서 補償받아야 할 危險補償額(Risk Premium)의 變數이다.

監査意見表明에 따른 法的危險은 다음의 두가지로부터 決定이 될 것이다[9].

- ① 外部情報利用者の 財務諸表依存度 ... 企業의 規模, 所有持分の 分散程度등이 커질때, 危險이 增加함.
- ② 監査對象企業의 財務構造 ... 流動性의 狀態, 資本調達方法등에 따라 危險이 변함.

특히, 資産 및 賣出등으로 代辯되는 企業의 規模는 外部情報利用者가 가장 重視하는 數值이며, 規模가 클수록 利害關係者의 增加로 인한 危險이 높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資産規模를 기준으로 한 監査報酬의 決定은 危險補償額의 性格이 짙은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다음은 監査投入時間과 危險補償額을 기준으로 한 報酬體系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결국, 監査市場의 與件이 成熟되지 못한 環境에서는 危險補償基準變數를 정해 놓고 그 基準變數에 依據하여 監査投入時間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며, 차츰 環境이 성숙되면 감사투입시간기준 보수체계를 근거로 한 自由로운 價格競爭을 통하여 監査人, 監査對象企業 및 一般情報利用者 모두의 效益을 極大化하여야 한다. 다만 危險補償基準報酬體系에서는 業種에 따라 危險의 性格이 相異하므로 基準變數의 選擇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資產規模를 基準으로 한 우리나라의 監査報酬體系에서 貨貸業과 貿易業의 比較는 監査報酬의 論難이 되는 사례중 하나일 것이다.

〈표〉 監査投入時間과 危險補償額을 基準으로 한 報酬體系의 比較

報酬體系 區分	監査投入時間基準 報酬體系	危險補償額基準 報酬體系
論理的 妥當性	限界費用에 根據한 價格設定	危險補償額에 根據한 價格設定
前提 環境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과 監査人의 職業倫理意識이 높아 自由로운 價格競爭이 이루어지는 監査市場에 適合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과 監査人의 職業倫理意識이 낮아 監査危險에 따라 監査投入時間을 定하지 못하는 環境下에서 基準變數에 依據하여 強制的으로 監査投入時間을 誘導하는 監査市場에 適合
備 考	與件이 좋지 못하면 監査報酬의 割引競爭을 통하여 監査市場의 失敗에 이름	業種에 따라 危險의 屬性이 다르므로 基準變數의 決定에의 어려움이 있음

與件이 成熟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環境에서 監査投入時間을 基準으로 한 自由로운 價格競爭을 급하게 導入하게 되면 監査品質을 고려하지 않은 監査報酬의 割引競爭이 발생하기 쉬워 자칫 監査市場의 失敗가 이루어지기 쉽다.

한편, 監査市場의 與件이 성숙된 미국 등 외국에서도 모든 投入時間에 대한 監査原價를 감사대상기업에 請求하는 것이 아니고 각 會計法人마다 각기 實現比率(Realization Ratio)를 정해 놓고 監査에 대한 保險料를 포함한 危險補償額을 고려하여 監査報酬를 請求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監査報酬가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자산규모에 정확히 比例關係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現行 監査報酬規程이 監査投入時間要素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이와 같은 두 변수는 각기 다른 환경하에서 監査報酬의 決定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主된 役割을 하고, 다른 하나는 補完的인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監査遂行所要資源과 監査對象企業의 資産規模의 關係는 線型關係로 볼 수 없는 경우가 一般的이다. 監査대상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監査報酬가 監査가 투입된 시간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請求할수 있는 時間(Chargeable Time)은 企業의 規模가 커질 수록 線形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최근의 회계監査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危險接近方法(Audit Risk Approach)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監査對象企業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企業의 訴訟에 대한 露出危險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減감된다. 企業의 規模가 커질수록 財務諸表에 대한 外部利用者の 依存度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오류가 企業外部利用者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고 따라서 監査人의 訴訟에 대한 露出危險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企業의 規模가 커지면 效率的인 內部統制制度의 運用 및 外部關聯法規上의 規制의 增加 등의 요인으로 인해 露出危險이 企業規模의 증가에 따라 線形的으로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企業의 규모에 따라서 遞減的으로 增加하는 露出危險에 직면하게 되는 監査人은 사전에 설정한 目標 監査危險(즉, 監査의 品質)을 達成하기 위해서 監査證據의 수집수준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監査報酬가 결정되는 것이 合理的이다.

일반적으로 監査인이 달성하여야 할 目標監査危險(Desired Audit Risk), 監査인이 직면한 露出危險(Exposed Risk), 그리고 監査인 監査遂行程度를 나타내는 摘發危險(Detection Risk)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AR = ER \times DR$$

단, AR : 目標監査危險 (Desired Audit Risk)

ER : 露出危險 (Exposed Risk)

DR : 摘發危險 (Detection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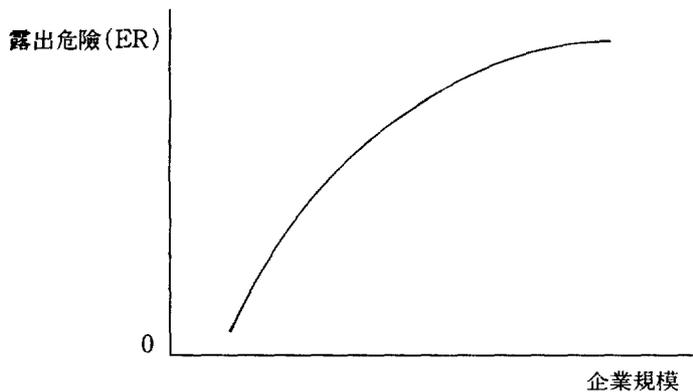
露出危險이란 監査인이 特定會社에 대한 監査를 수행하기 전에 監査인이 직면한 위험인 固有危險과 統制危險의 두가지로 구성된다. 固有危險(Inherent Risk)은 企業의 主要計定科目의 特性이나 營業上의 特性등으로 決定되는 危險으로 아무런 內部統制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危險이다. 統制危險(Control Risk)은 이러한 固有危險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企業內部的으로 설계하여 運用하고 있는 內部統制制度에 의하여 豫防되거나 適時에 發見되지

못하는 危險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危險은 監査人의 努力에 따라 감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수행중에 豫備調査등을 통하여 이를 評價하여 監査節次에 반영하게 된다. 감사대상기업의 규모는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企業의 規模가 增加하는 경우 영업전반에 걸친 複雜性의 增加로 인하여 誤謬發生의 危險이 증가하며, 財務諸表 利用者의 增加로 인하여 감사인이 訴訟을 당하는 危險도 증가된다. 따라서 會計監査에 있어서 전반적인 露出危險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企業의 規模가 커질수록 內部統制制度의 效率인 設計 및 運用 등의 努力과 外部의 法規上의 規制의 強化로 인하여 露出危險은 결과적으로 遞減的으로 增加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露出危險과 企業規模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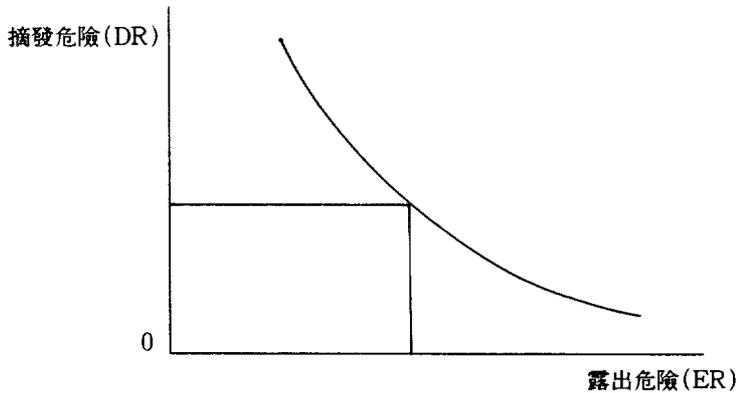


摘發危險 (Detection Risk)은 露出危險과는 달리 統制可能한 危險으로써 감사인이 미리 설정한 目標監査危險을 達成하기 위한 監査의 遂行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감사인이 適切한 監査를 수행하고서도 誤謬를 發見하지 못할 危險이다. 따라서 摘發危險은 目標危險과는 正의 相關關係를, 監査投入時間과는 負의 相關關係를 가지며 監査危險模型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시켜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DR = AR \div ER$ <p>단, DR : 摘發危險 (Detection Risk) AR : 目標監査危險 (Desired Audit Risk) ER : 露出危險 (Exposed Risk)</p>
--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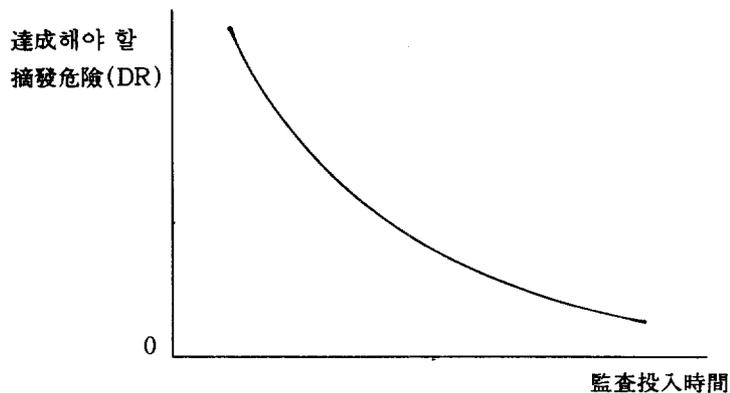
露出危險과 摘發危險의 關係



감사인이 미리 설정한 目標監査危險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사의 수준은 摘發危險이라 하는데 이는 監査時間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監査證據 募集時間이 增加될수록 摘發危險은 감소하지만 그 減少水準은 監査投入時間의 增加水準과 線形比例關係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一定水準에 도달하면 摘發危險을 낮추기 위해 追加적으로 投入하여야 할 監査時間은 加速的으로 많아 지는데, 그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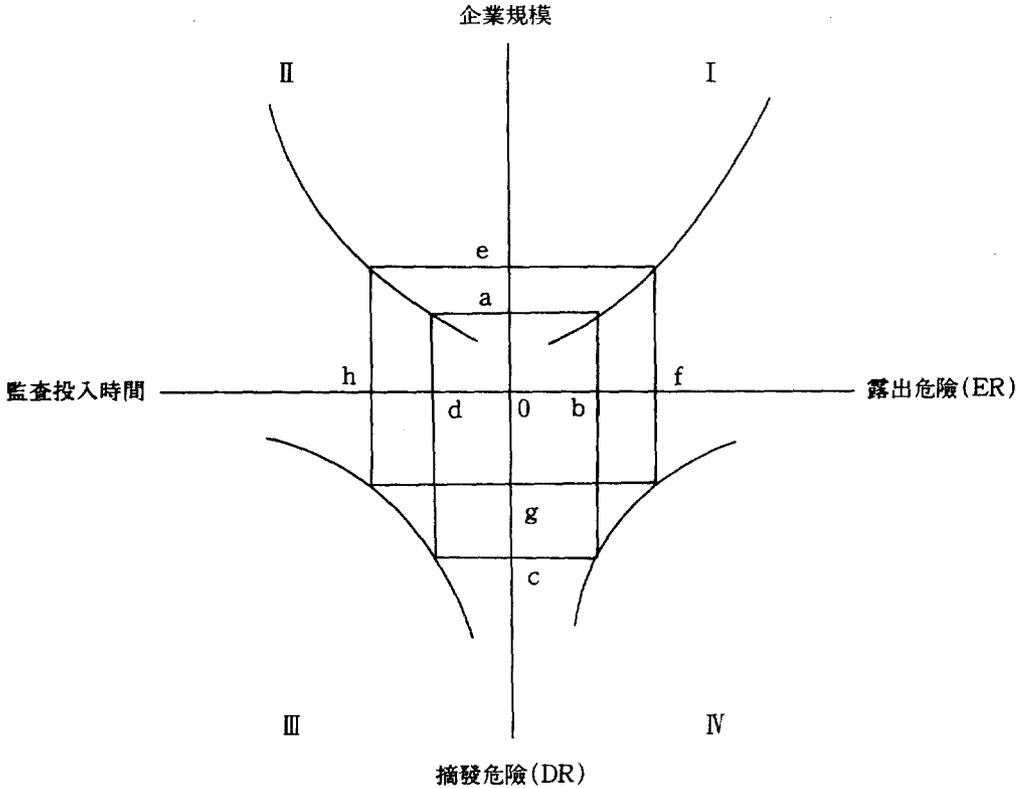
<그림 3>

監査投入時間과 達成해야 할 摘發危險과의 關係



지금까지의 監査危險, 企業規模 및 監査投入時間의 相互關係를 종합하면 <그림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4> 危險, 企業規模 및 監査投入時間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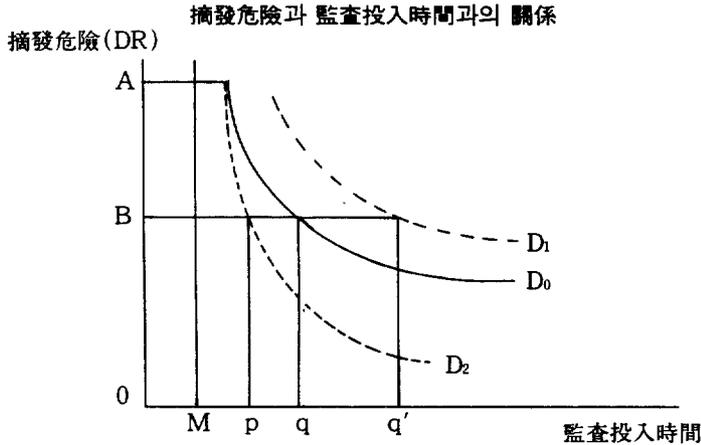


즉, 特定企業이 a와 같은 規模를 갖고 있고 다른 露出危險의 요인이 規模와는 關係없이 일정하다면 I상한에서 b의 露出危險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IV상한에서 미리 설정된 目標監査危險에 따라 정해진 c의 摘發危險을 達成하기 위해서 III상한에서 d의 監査投入時間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監査對象企業의 規模가 a에서 e로 증가한다면 e → f → g → h로 결정되는 監査투입시간 h가 필요한 것이며 a에서 e로 규모가 증가한 것보다는 작은 비율의 監査투입시간의 증가가 요구된다. 즉, 監査投入時間은 監査의 規模의 增加에 따라서 比例的으로 增加하지는 않을 것이다.

企業의 規模 이외에도 財務構造나 經營者의 能力에서 危險이 增加되면 I상한에서의 曲線은 右下向移動을 하여, 同一한 企業規模일지라도 露出危險이 增加되어 더 많은 監査投入時間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監査인이 달성하여야 할 目標監査危險을 낮게 설정하여 監査의 品質을 높히려 한다면 IV 상한에서의 곡선이 左上向移動을 하여 監査投入時間의 增加가 필요하

다. 반면에 III상한에서의 曲率의 移動 및 曲率등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인이 어느 기업에 대해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얻게되는 熟練度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림 5>



<그림 5>의 摘發危險과 監査投入時間의 相互關係를 설명하는 곡선 D_0 는 다음의 두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 ① 曲線의 座標상의 移動
- ② 曲率(curvature)의 決定

이중 곡선의 좌표상의 이동은 감사인이 事前에 設定한 目標監査危險에 의해 결정한 摘發危險(監査遂行程度)에 따른 證據蒐集量을 전체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다. 만약,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도산의 증가로 訴訟을 당할 위험이 증가하여 감사인 스스로가 監査投入時間을 높이는 경우는 곡선 D_0 는 D_1 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通常 B의 摘發危險에 따른 q의 監査投入時間을 決定한 監査人이, 訴訟危險의 增加로 B의 摘發危險에 대하여 q보다 많은 q' 의 監査時間을 投入할 것이다. 또한 外部規制機關에서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最小限의 要求監査證據量(M : minimum required audit evidence)을 변동시킨 경우는 <그림 5>에서 점근선 M의 위치가 변동이 될 것이다.

한편 曲率은 감사인의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의 熟練度의 증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의 감사에 투입된 두 監査人이 監査技術의 差異로 인하여 감사수행에 있어서 熟練度(企業業務에의 適應度)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림 5>에서 보면 감사인이 달성해야 할 摘發危險이 B라 하고, 이미 감사수행중의 特定時點에서 달성한

摘發危險이 두 감사인 모두 A라 하면 같은摘發危險 B를 達成하는 과정에서 한 감사인의 증거 수집능력(D_2)이 다른 감사인의 그것(D_0)보다 탁월한 경우 <그림 5>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기울기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監査投入時間이 增加됨에 따라 摘發危險을 낮추기 위하여 수행하는 감사의 투입시간이 많아지면서 동일한 활동을 반복수행하게 되어 얻게 되는 감사숙련도의 향상정도가 높다면 더욱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目標監査危險 B를 達成하기 위하여 한 감사인은 p의 감사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숙련도의 향상 정도가 낮은 다른 감사인은 q의 감사시간이 소요된다.

監査業務를 反復遂行하게 되면 일에 익숙해져서 業務能率이 향상된다. 따라서 감사인이 특정 감사대상기업에 대하여 처음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감사가 진행되면서 監査한 財務諸表의 金額의 증가에 따른 감사수행금액단위당 소요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자산규모가 커질 수록 監査投入時間은 遞減的으로 增加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資産規模는 監査投入時間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사시간투입량의 변수에 근거한 監査報酬 決定方法은 市場의 需給의 原理에 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監査人力의 效率的인 運用, 專門化된 監査의 導入(예를 들면, 電算監査를 비롯한 內部統制構造의 監査를 통한 立證監査의 時期 및 範圍調整)으로 監査投入時間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미래의 監査報酬의 決定은 주로 두번째 변수인 危險補償要素의 重要性이 보다 대두되고 있다.

V. 맺음말

近來에 와서 公認會計士에 의한 會計監査의 必要性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한편, 監査人의 責任問題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감사서비스의 供給側面에서 보면 新規公認會計士가 상대적으로 量産됨에 따라 감사인사이의 監査業務誘致競爭이 날로 深化되고 있는 형편이다.

회계감사서비스는 그 需要와 供給측면에서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課題는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信賴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계감사가

다른 어떤 전문직의 서비스 보다도 社會的 信賴를 存立의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信賴를 높이기 위해서는 監査人이 表明하는 監査意見의 品質을 높일 필요가 있다. 監査品質은 DeAngelo가 定義한 바대로 '特定監査人이 監査對象企業의 회계 시스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고 이러한 발견사항을 보고할 結合確率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말하는 것이다[12].

監査品質을 決定하는 입장에서 監査人은 監査契約時 監査報告書의 意見表明에 따른 法的責任과 그 法的責任을 지는 데 所要되는 監査投入時間의 補償額인 監査報酬를 比較하여 監査可能性을 打診하게 되며, 監査對象企業의 意見表明에 대한 危險이 크다면 監査投入時間이 增加되고 결국 監査報酬請求額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監査對象企業의 意見表明에 대한 危險과 監査報酬請求額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監査對象企業의 意見表明에 대한 위험은 利害關係者의 數와 損害賠償請求額의 크기로 代辯될 수 있는데, 監査對象企業의 자산규모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現行 우리나라의 監査報酬體系는 監査對象企業에 대한 감사인의 意見表明에 따른 위험의 요소를 중시하는 監査對象企業의 規模를 기준으로 하여 監査報酬를 策定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監査人과 被監査人 그리고 기타 監査報告書 利用者의 實情을 고려한다면 資産規模에 의한 監査報酬體系는 현실적인 妥當性이 있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는 近來에 와서 점점 중요성이 浮刻되는 감사인의 法的 責任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報酬體系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現行的 資産規模中心의 監査報酬體系는 전반적인 監査技術의 發展에 障壁要因이 될 수 있다. 즉, 監査人사이의 價格競爭이 制限됨으로써 非價格的 要因의 誘致競爭이 加速化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理想的인 市場이 形成된다면 監査人の 監査費用과 監査對象企業의 監査效益이 相互均衡되는 곳에서 監査報酬가 策定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이 낮고 監査人の 職業的 倫理意識이 낮은 狀況下에서는 監査報酬體系自體의 代案考慮보다는 配定制의 部分實施, 監理制度의 強化등과 같이 監査報告書의 位置를 높이는 方向으로 政策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추후에 監査人과 監査報告書利用者의 意識이 높아지면 基準變數에 의거한 監査報酬體系보다는 監査投入時間에 根據한 監査報酬體系를 指向을 하여 自由로운 價格競爭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監査報告書의 活用水準을 높이고 監

査人の 職業的 倫理意識을 提高하여 理想的인 監査市場에 접근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李晩雨, “會計監査에 대한 社會的 信賴를 높이는 方案”, 會計, 第24號(1988), 韓國公認會計士會, pp.28-35
2. _____, “證券市場에 있어서 會計情報公示規制”, 新평저널, Vol.2., No.2(1989a) 韓國信用評價株式會社, pp.38-49.
3. _____, “우리나라 企業公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上場協, 제19호(1989b) 韓國上場會社協議會, pp.38-49.
4. _____, “건전한 회계처리유도 및 공정한 외부감사를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 제고방안”, 經營論叢, 제37집(1993) pp.17-34.
5. 정기영 · 공해영, “外部監査의 必要性, 問題點과 改善方向”, 경영경제, 제23집(1990),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pp.327-343.
6. 趙益淳 · 李晩雨, 「會計監査(수정판)」, 박영사, (1992).
7. _____, “企業會計基準과 商法등의 會計規制 內容比較”, 研究報告書 91-2(1991), 韓國上場會社協議會.
8.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6(1973)
9. Arens, Alvin A. and James K. Loebbecke, Auditing : An Integrated Approach 3r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Inc., 1984, pp.245-248.
10. AICPA, “Resolution on Legal Liability”, Journal of Accountancy, (November 1992), pp.18-23.
11. Bromwich, M., The Economics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 Prentice Hall, 1985.

12. DeAngelo, L.E., *The Audit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An Economic Analysis*, UMI Research Press, 1980.
13. _____,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1981a), pp.113-127.
14. _____,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1981b), pp.183-199.
15. Estes, R., "The Auditor's Report and Investor Behavior", Lexington Books, 1982.
16. Griffin, P.A., *Usefulness to Investors and Creditors of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Reporting : A Review of Empirical Accounting Research*, Reserach Report, FASB, 1982.
17. McConnell, Jr., D.K., *Public Company Auditor Changes and Big Eight Firms*, UMI Reseach Press, 1983.
18. Ng, D., "Supply and Demand for Auditing Services and the Nature of Regulations in Auditing", *Accounting Establishment in Perspecive*, 1979, pp.99-125.
19. Previts, G.J., *The Scope of CPA Services*, John Wiley & Sons, 1985.
20. Simunics, D., "The Pricing of Audit Service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ch*(Spring 1980), pp.161-190.
21. Turpen, R.A., "Differential Pricing on Auditors' Initial Engagements : Further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9, No. 2,(Spring 1990), pp. 60-76.
22. Wallace, W.A., *The Economic Role of the Audit in Free and Regulated Markets*, Touche Ross Foundation, 1980.

